

업무추진비 지급 내규

제정 1998. 05. 26.

제2차 개정 2014. 09. 24.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. (개정 2007.6.14)

제2조(사용자 범위) 업무추진비의 사용자는 총장 및 다음 각 호의 부서장으로 한다 .

1. 부총장
2. 총장이 인정하는 부서장 (개정 2007.6.14.)

제3조(지출의 한도 및 사용목적) ① 지급한도액은 일반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.

② 사용목적은 다음과 같다 .

1. 총장 정보비
2. 행정업무 추진비
3. 대외인사 접대
4. 경 · 조사금

제4조(정보공개) 업무추진비의 지출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법과 유관 법규에 따라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. (개정 2007.6.14. 2014.09.24.)

부칙

이 내규는 199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.

부칙

이 내규는 200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.

부칙

이 내규는 201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.